

임실군의회 제335회 임시회에서 심의·의결된 「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4년 4월 24일

임실군의회 의장



임실군의회 조례 제10호

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동법 시행령 제36조”를 “같은 법 시행령 제33조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지방의원”을 “임실군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”으로, “한다)”를 “한다) 공무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임실군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이 회기 중 의회의 회의(이하 “본회의”라 한다)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”를 “의원이”로, “여행하는 때에 여비를 지급한다”를 “출장 또는 여행하는 때에 여비를 지급한다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여행을 할”을 “의원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여행을 할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6조제2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”로 한다.

제8조 본문 중 “제4조의 규정”을 “제4조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규정된”을 “규정된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”으로, “의회 지방공무원의 예”를 “「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」”로 한다.

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) 별표 1 및 별표 2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1]

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(제2조 관련)

1. 의정활동비 : 연18,000,000원(월1,500,000원)

[별표 2]

임실군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(제7조 관련)

2. 국외 항공운임

구분	준용
의장·부의장	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별표 3의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
의원	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별표 3의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